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2025.6.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동 법률에 근거하여 계약정원과 계약학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하며, 산업체 및 대학 등의 계약정원과 계약학과 운영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정원, 계약학과 간 용어 정의 개편 (안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개정)

상위법에 따라 계약정원을 상위개념화하여 계약정원과 계약학과 간 개념을 명확화하고자 함

나. 계약정원 운영 분야 확대 (안 제8조 제5항 개정)

계약정원의 운영 분야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 한정에서 전분야로 확대하여 계약정원 운영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첨단

분야 및 비첨단분야 간 융합 교육과정의 운영을 확대하고자 함

다. 계약정원·학과 운영 경비 (안 제8조 제7항 개정)

대기업이 협력·하도급 업체 소속직원의 계약정원·학과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라.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 확대 (안 제8조의2 제2항 개정)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5에서 1/4까지로 확대하여 현장의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마.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안 제42조제2항제3호 신설)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요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설립 시는 물론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바.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관리 강화 (안 제42조의2 신설)

기술지주회사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회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 작성 등 회계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사.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 (안 제43조 제4호의2 및 제10호 개정)

- 현행 법령상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업무 대상은 자회사에 한정되어 있으나, 시설 임대 업무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의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확대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수익 활동 범위를 확대

- 또한, 기술지주회사가 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만 기술 이전·중개 업무가 가능하던 것을 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성장을 지원

아. 자회사의 주식 보유 의무 예외 사유 삭제 (안 제45조 삭제)

법 제36조의4제4항 개정예 따라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한 후에도 자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어, 현행 시행령에 규정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유예기간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을 “(계약정원의 편성·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려”를 “계약정원을 편성·운영하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계약학과등”을 “계약정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기간”을 “계약정원의 편성·운영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계약학과등이 그 설치·운영기간”을 “계약정원이 그 편성·운영기간”으로, “계약학과등에”를 “계약정원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약학과등”을 각각 “계약정원”으로 한다.

-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학과 및 학부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한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하

“계약정원”이라 한다)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정원 편성·운영은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8조제4항제1호 전단 중 “경우에는”을 “계약정원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는”을 “계약정원을 편성·운영하는”으로, “계약학과등”을 “계약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여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 계약정원을 운영하는 경우 그 계약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정원은 우선 활용하려는 학과·학부의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약학과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을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하여 계약정원

을 운영하는 경우 계약정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을 “계약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는”을 “계약정원을 편성·운영하는”으로, “계약학과등의”를 “계약정원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체등은 하도급 관계에 있는 다른 산업체등이나 부품·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산업체등의 부담금을 대신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8조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 본문”으로, “계약학과등”을 “계약정원”으로, “계약학과등을 말한다)을 설치·운영하는”을 “계약학과등의 계약정원을 말한다)을 편성·운영하는”으로, “계약학과등의”를 “계약정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을 “계약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을 “계약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기간은 계약학과등”을 “계약정원의 편성·운영기간은 계약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2호 중 “계약학과등”을 “계약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제1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으로,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을 “계약정원의 편성·운영”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교육과정) ①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등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그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고등학교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와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및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정원으로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정원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의3의 제목 “(계약학과등의 신고절차 등)”을 “(계약정원의 신고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려”를 “계약정원을 편성·운영하려”로, “같은 조 제2항”을 “법 제8조제2항”으로, “계약학과등 설치·운영계획”을 “계약정원 편성·운영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학과등을”을 “계약정원을”로, “계약학과등 폐지계획”을 “계약정원 폐지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을 “(계약정원의 공동 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 하려”를 “계약정원을 편성·운영하려”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을 “(계약정원의 편성 제한 등)”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기술지주회사의 회계원칙 등) ① 기술지주회사는 「상법」에 따라 영업상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제4호의2 중 “자회사”를 “자회사 등 대학의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산업교육기관”을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다른 산업교육기관”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등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그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고등학교과정, 전문학사 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 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와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및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교육	제8조(계약정원의 편성·운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학과 및 학부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한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하 “계약정원”이라 한다)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정원 편성·운영은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② ----- 계약정원을 편성·운영하려----- -----

기관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포함시켜야 한다.

1. ~ 4. (생 략)

5.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 7. (생 략)

8. 계약학과등의 설치 ·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계약학과등이 그 설치 ·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③ 계약학과등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계약학과등의 학생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에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입학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

1. ~ 4. (현행과 같음)

5. 계약정원-----

6. · 7. (현행과 같음)

8. 계약정원의 편성 · 운영기간

9. 계약정원이 그 편성 · 운영기간-----
- 계약정원에 -----

③ 계약정원-----

-----.

④ 계약정원-----
-----.

1. -----
----- 계약정원의 경우에는

다)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둘 이상의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동일한 계약학과등 내에서 산업체등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모집단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제1항(「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시모집은 제외한다]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생략)

<신설>

----. -----

계약정원을 편성·운영하는 --
----- 계약정원
원 -----

-----.

2. (현행과 같음)

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여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 계약정원을 운영하는 경우 그 계약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⑤ 계약학과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 2. (생 략)

⑥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정원은 우선 활용하려는 학과·학부의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하여 계약정원을 운영하는 경우 계약정원-----

----- 계약정원-----

-----.

1. · 2. (현행과 같음)

⑦ 계약정원을 편성·운영하는-----

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제2항 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이 아닌 지역에 있는 산업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으로 한정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을 말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부담금을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 계약정원의 -----
----- .

다만, 산업체등은 하도급 관계에 있는 다른 산업체등이나 부품·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산업체등의 부담금을 대신하여 부담할 수 있다.

⑧ 제7항 본문-----

----- 계약
정원-----
계약학과등의 계약정원을 말한
다)을 편성·운영하는 -----
----- 계약정원의 -----

⑨ 제8항-----

-- 계약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

로 하는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은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⑨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기간은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⑩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에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⑪ 산업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으로 한정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생 략)

----- 계약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
-----.

⑩ 계약정원의 편성·운영기간은 계약정원-----

-----.

<삭 제>

⑪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개편, 학생 정원
증감이 수반되는 경우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
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2(계약정원의 운영) ① 산
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
구하는 경우로서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
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학과·학부의 학생 수 또는 학
생 정원 중 일부를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
한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하
“계약정원”이라 한다)으
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정원은 「초·중등교육
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

2. ----- 계
약정원-----

⑫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
항----- 계약정원의 편성
· 운영-----
-----.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교육과
정) ①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
과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는 계약학과등을 「초·중등교
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그 산업
교육기관에 설치·운영할 수 있
도록 인정된 고등학교과정, 전
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
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
위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와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
교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
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및 학위
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
학과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
다.

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
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
약정원은 우선 활용하려는 학과
· 학부의 해당 학년의 전체 입
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의3(계약학과등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려
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 2
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등 설치·운영계획 신
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려는 산
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
항에 따라 폐지 예정일 2주 전
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정
원으로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
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
진 경우에는 그 계약정원의 교
육과정의 100분의 25의 범위에
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
정할 수 있다.

제8조의3(계약정원의 신고절차
등) ① 계약정원을 편성·운영
하러-----
----- 법 제8조제2
항-----
----- 계약정원 편
성·운영계획 -----
-----.

② 계약정원을 -----

----- 계약정원 폐지계획

-----.

제9조(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학위수여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생략)

제4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① (생략)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략)

<신설>

<신설>

제9조(계약정원의 공동 운영) ---

----- 계약정원을 편성·운영하려-----
-----.

제9조의2(계약정원의 편성 제한 등) (현행과 같음)

제4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제42조의2(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원칙 등) ① 기술지주회사는 「상법」에 따라 영업상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

제43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법 제3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4. (생략)

4의2. 자회사에 대한 시설임대 업무

5. ~ 9. (생략)

10.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11. (생략)

제45조(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 사유) 법 제36조의4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술지주회사가 지분 양도등으로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자회사 등 대학의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5. ~ 9. (현행과 같음)

10. --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다른 산업교육기관 --

11. (현행과 같음)

<삭제>

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
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2.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
하여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3.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정하여 자회사 주식보
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4.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
환이 청구되거나 같은 법 제51
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신주인
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
사되어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
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
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
부터 10년 이내인 경우